

공시송달공고

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. 1. 15.로 수용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2월 28일

예 천 군 수



1. 사업의 명칭 :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(6차)

2. 사업 시행자 : 경상북도개발공사

3.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

· 공고기간(교부기간) : 2014. 2월 28일 ~ 2014. 3. 14일(15일간)

4. 공시송달 대상 토지내역 : 붙임 참조

5. 이의신청 등

·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(우 707-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)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시에는 당사자이 성명 또는 명칭, 주소,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· 수요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「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」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(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)

·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(054-650-6246)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(053-950-342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시송달 대상 토지내역

번호	소재지	당초지번	공부지목	면적(㎡)		보상금액	공부상소유자		비고
		편입지번	실제이용	당초	편입		성명	주소	
1	호명면 금능리	산20 산20-1	임야 임야	57,917	2618* 1/24	370,880	이문수	서울 구로구 오류동 31-343	
1	호명면 금능리	산20 산20-2	임야 임야		1325* 1/24	187,700	이문수	서울 구로구 오류동 31-343	
1	호명면 금능리	산20 산20-2	임야 대지		108* 1/24	221,850	이문수	서울 구로구 오류동 31-343	
1	호명면 금능리	산20 산20-3	임야 임야		94* 1/24	13,310	이문수	서울 구로구 오류동 31-343	
계						793,740	이문수		